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추진실적 평가 및 효율적 추진 방안 강구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안 제3조)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도시정비국장
- 위 원: 13인 이내
- 간 사: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

3. 조례(안): 별첨

4. 관계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운영계획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 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마포구 부구청장(이하“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과장
2. 지역교통과장
3. 도시정비과장
4. 토목과장
5.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6.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7조(자료의 제출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정동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해결 청원 심사보고서

1992. 7. 20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마포구 합정동 376-21
성명: 박계승 외 189인

나. 접수일자: '92. 3. 6

라. 회부일자: '92. 7. 11

마. 상정일자: 제10회의회(임시회) 제3차위원

회(92. 7. 15) 상정의결

2. 청원요지

피해지역 주민의 재산세 감면, 양화진성당등 명소지역의 정서회복과 공해 요소제거, 지하철2호선 합정역-당산역 구간 수증터널 구축, 강변로 주택 지역 및 절두산 성지지역에 방음벽 설치, 공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

3. 취지설명 요지:없음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재)

가. 지하철과 자동차소음등 공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재산세 감면요구는 현행 법규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강변로주변 주택 및 절두산 성지지역의 방음벽설치 요청과 지하철 2호선 당산철교 합정동구간의 전동차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해소책은 합정동 청원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관련기관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다. 각종 공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음.

5. 질의답변요지:없음

6. 토론요지

홍선환위원: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심사결과 의견:별첨

합정동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청원의 건서

첫째, 강변로 주변주택 및 절두산 성지지역에 방음벽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둘째, 지하철 합정역-당산철교 구간에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키면서 소음, 진동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봄.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

심사보고서

1992. 7. 20

1. 심사결과

가. 청원인 주소:마포구 상암동 747

성명:유명근 외 173인

나. 소개의원:권오범 의원

다. 접수일자:'92. 3. 6

라. 회부일자:'92. 7. 11

마. 상정일자:제10회의회(임사회) 제2차위원회('92. 7. 14) 상정의결

2. 청원요지

난지도 쓰레기장 조기철거 및 정화관리, 녹지지구 해제, 부분 준공업지역보전. 농지전용 규제 완화, 부당정책된 공시지가가 수정보완

3. 취지설명요지

(소개의원 권오범의원)

청원인들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청원은 상암동 지역 전반에 대한 복합청원으로서, 분야별로 차례로 보고드리면,

가. 난지도 쓰레기장의 조기철거 및 정화관리

'92년 10월말 폐쇄이후의 활용방안은 현재 실시중인 전문용역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으므로 금년 연말부터 문제점에 대한 가시적인 해소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됨.

나. 녹지지역 해제

'92년 10월말 쓰레기장이 폐쇄되고 난지도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택지개발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됨.

다. 상암동 9번지일대 부분준공업지역 보전

1976년 12월 9일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향후 상암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 지정은